

제267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4. 2. 5.

의회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71
----------	------

2024. 2. 5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4. 1. 18.
- 나. 회부일자 : 2024. 1. 25.
- 다. 상정일자 : 2024. 1. 29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김미영 의원

나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(2023.9.22.시행)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가.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(안 제4조)
- 나.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(안 제5조)

- 다.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 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위원의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위원회의 활동기간, 위원장의 보고 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바.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, 인사청문회의 공개 (안 제12조~제14조)
- 사.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(안 제15조 및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1. 24. ~ 2024. 1. 28.) 결과: 접수된 의견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최미화)

- 의안번호 제2171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」은 2024년 1월 18일 김미영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(2023.9.22.시행)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 제1항 1)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명시하였음
 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²⁾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 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³⁾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- 안 제4조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, 정수는 7명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을 호선으로 정하고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되도록 함

-
- 1) 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 1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
 2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
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 - 2) 제76조(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 - 3) 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안 제5조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인사청문의 방식, 안 제7조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및 인사청문회 기한 등을 규정하였음
-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▶ 인사청문회의 절차, ▶ 증인 등의 출석요구 ▶ 위원회의 활동기간, ▶ 위원장의 보고, ▶ 자료제출요구, ▶ 검증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
- 안 제14조에서는 인사청문회는 공개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안 15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대상자 및 증인 등이 소명시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며, 안 제16조에서 대상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

1. 군사·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3.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
4. 계속(繫屬)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
5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안 제 1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, 안 제 18조는 허위 사실 발언이나 비밀 누설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였음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위법에 위반이 없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
- 향후 집행부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의 취지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 역할을 고려하여, 인사청문을 적극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